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2015년 6월 2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은 6월 1일 15시부터)

문의 : 동아시아FTA협상담당관 김재준 과장(02-734-1864), 이가영 사무관(1865)
동북아통상과 이재근 과장(044-203-5690), 윤진영 사무관(5691)

한·중 FTA 정식서명, 중장기 미래 협력의 제도적 틀 마련

- 양국간 관세철폐로 GDP 12조달러 거대시장 탄생,
패션, 화장품, 생활가전, 고급식품 등 소비재 수출확대 기대 -
-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 성장 기대-

[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 우리의 최대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으로써 **한중 수교 23년, 양국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 '15.6.1(월)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Gao Hucheng) 중국 상무부 부장은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했다.

○ 양 장관은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3개의 한·중 FTA 협정문을 서명하고 이를 교환함으로써 지난 **'12.5월 협상개시 이후 3년만에** 정식서명 절차를 완료하였다.

○ 이로써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한·중 FTA는 **'14.11월 실질 타결 선언, '15.2.25일 가서명(initialing)을 거쳐 정식서명을 마무리**하고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절차만 남겨놓게 되었다.

[양국 정부 · 기업, 한 · 중 FTA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

□ 양국 통상장관은 서명식 계기에 개최된 한 · 중 통상장관회담에서도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 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 아울러,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경제 통합 방안과 한중 산업단지 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 교환을 하였다.

□ 서명 이후 개최된 「한·중 FTA 기념만찬」에서는 **양국 정부, 주요 기업,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FTA 성과 극대화 방안과 조기 발효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교류가 이루어졌으며,

○ **FTA민간대책위원회***는 한·중 FTA가 **중국과의 무역·투자와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경제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조속한 발효**를 촉구하였다.

* 경제 4단체(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 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

[한·중 FTA 효과 ① : 10년간 GDP 0.96% 추가성장]

□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①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하고 ②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 개선되며 ③ **고용은 5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중 FTA의 거시경제 효과 >

구분	5년	10년
실질 GDP(%)	0.30	0.96
소비자 후생(억불)	56.34	146.26
고용효과(천개)	13.6	53.8
재정효과(조원)(연평균)	△0.17	0.27

○ 이는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며,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 고려시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효과 ② :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 확대]

□ 한·중 FTA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 **중소기업도 중국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중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 및 제3국 기업의 對韓 투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시장기회 창출)** 양국간 관세철폐로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며,

○ 특히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한 "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 : 스킨케어 관세삭감, '화장품 韓流'로 활용 >

◈ 화장품 기업 A社는 최근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영화와 K-Pop 등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중국으로 화장품 수출을 새로이 모색 중

◈ 한·중 FTA 체결로 중국의 스킨케어 제품 관세율(6.5%)이 5년에 걸쳐 낮아진다는 점을 활용하여 중국 바이어에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추진

□ **(비관세장벽 해소) 통관·인증·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간 비관세 장벽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對中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 : 품목분류 일관화, 수출기업 통관 애로 해소 >

◈ B社는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전통술이 국내에서는 발효주로 인정됨에도 중국 해관에 따라 증류주로 분류하기도 하는 등 통관애로

◈ 한·중 FTA에서 중국은 발효주 관세를 2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협정문에서 통관의 일관성을 규정

⇒ B社는 한·중 FTA가 조속히 발효될 경우 통관애로가 해소되고 관세 철폐로 자사 전통주의 對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투자유치 확대)** 한·중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로 부상하면서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들의 對韓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 사례 : 한국 기술과 브랜드를 활용한 중국 진출 목적의 對韓 투자 >

◈ **(글로벌→韓→中)** 글로벌 맥주업체인 C社는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맥주 생산시설을 설립할 계획

- 국내 R&D 시스템과 입주기업 네트워크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고, 항만이 가까워 중국 진출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한국 투자 결정

◈ **(中→韓→中)** 중국 식품기업 D社는 한국의 기술력과 중국내 마케팅을 결합하여 중국 내수시장 진출 목적으로 한국 투자

- 한국산 매실·과일 사용하여 과일푸딩 및 젤리생산 → Korea 브랜드 파워와 중국내 자체 유통망을 접목, 중국으로 역수출 추진

[향후 계획]

□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한·중 FTA의 혜택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서명 직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

○ 향후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붙임 1 : 한·중 FTA 주요 의의
붙임 2 : 한·중 FTA 주요내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가영 사무관(02-734-1865)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중 FTA 주요 의의

①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 완성

- 美·中·EU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체결 (10대 경제체 중 유일)**
- **FTA 체결국의 시장 규모 합계*가 세계 5위에서 3위로 도약**
-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63.03%로 제고**
 *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타결, 이 중 49개국과 11건의 FTA가 발효 중
 - 우리 FTA 시장규모는 타결된 FTA 기준으로 약 73.45% (우리 GDP+상대국 GDP)

② 중국이라는 거대·성장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 기회 확보 ⇒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

※ 중국 GDP(10.4조불)는 한국(1.4조불)의 7배 이상 : 세계의 공장 & 시장

* 중국은 매년 GDP 7% 이상 성장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 시장

- **국내 내수형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기업화 轉機**
 * 기존 소재·부품 외에도 패션·영유아용품·의료기기·생활가전 등 수출 확대 기대
 * 기술력·디자인·브랜드를 보유한 혁신제품·융합제품에 새로운 기회가 부여
-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1위 守城의 버팀목 마련**
 * 중국내 수입시장 점유율 : ①한국(9.7%), ②일본(8.3%), ③미국(7.8%), ④대만(7.7%)
-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이 對中수출 730억불, 對中수입 418억불로서, **한-미 교역액 전체(1,036억불)를 초과**
 * 최장 20년내 관세철폐 대상 품목 금액 : 한국 736억불 < 중국 1,417억불(약 2배)
- 자유화 최종 달성시, **對中 수출의 관세절감액이 연간 54.4억불**에 달함
 * 한-미 FTA(9.3억불)의 5.8배, 한-EU FTA(13.8억불)의 3.9배

③ 국내 농수산 시장은 최대한 방어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 기회 마련

- 우리의 **기체결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 농수산 시장을 보호**
 * 한국의 FTA 중 농수축산물 자유화율 비교 (품목수기준/수입액기준, %)
 - 한-미 FTA (98.3/92.5), 기체결 10개 FTA 평균 (78.1/89.0), 한-중 FTA (70/40)
- **중국 농산물의 91%, 수산물의 99%를 자유화**(품목수 기준)하여 **한국산 고급·안전 농수산식품의 對中 수출 기회 확보**

④ 수출·투자 기업의 손톱 밑 가시 등 비관세장벽 해소

- **통관·시험인증·지재권** 등 분야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 (통관) 48시간 통관 원칙, 700불이하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일관적인 세관 집행 원칙
 (시험인증)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시험인증기관 상호 인정 협력 강화
 (지재권) 외국 유명상표 보호 강화,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폐기, 권리구제 장치
- **주재원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확대, 중국 정부내 애로해소 담당기관 지정**
- 비관세조치 **시행 전 유예기간** 확보, 비관세조치 **분쟁해결 중개 절차** 도입

⑤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개방 (도시화 관련 산업, 문화, 유통 등)

-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유통·법률** 등 유망 시장 일부 개방
- **네거티브 방식에 기반한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 기회 확보
 * 본 협정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개시하여, 개시 후 2년 내 마무리

⑥ 글로벌 FTA 허브로서 투자유치 확대 기대

- 歐美向 **중국 기업들의 對韓 투자 확대**와 中國向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의 對韓 투자 증대**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U턴 포함)

⑦ 한-중 관계 심화와 (한류)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 **한-중 FTA는 경제 분야에서의 제2의 수교**이자, 양국 **경제관계 규율의 제도적인 틀**
- **중국인에게 한국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구축 → 금전 이상의 가치**
- **중국인 방한 관광객 증가는 국내 서비스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610만명, 2020년에는 1,000만명에 달할 전망
- 저작권·보상청구권·배타적 권리 등 **한류 컨텐츠 보호 강화**

⑧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및 한반도 평화 안보에 기여

- 한-중 FTA는 아태지역 경제 통합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마련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 생산 제품에도 원산지 지위 인정
 *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한 총 310개 품목(HS코드 6단위 기준)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키로 하여 우리의 기체결 FTA 중 가장 우호적인 결과
- 한-중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한반도 평화 안보에 도움**

붙임 2 한·중 FTA 주요내용

1 상품 양허

❖ **(총괄)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장 20년내 중국 시장의 수입 관세를 철폐**

❖ **(제조업) 장기적 시각에서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하고, 기존 주력 품목은 효과적인 경쟁력 관리에 역점**

❖ **(농수산) 우리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중국 내수시장 수출 기회를 확보**

□ 양측은 **모델리티 자유화율 이상의 관세 철폐**에 합의하여 당초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시장 자유화 달성

* 자유화율(품목수, 수입액, %) : 모델리티(90, 85), 중국(91, 85), 우리측(92, 91)
- 품목수는 양국의 '12년 HS 코드, 수입액은 '12년 교역액 기준

○ **(중국)**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5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철폐,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내 철폐**

○ **(한국)**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철폐, **품목수 92%**(11,272개), **수입액 91%**(736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내 철폐**

□ 한·중 FTA는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차년도 1월 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을 채택**

※ **금년 중 한·중 FTA 협정 발효시** 발효일에 1년차 관세가 인하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년차 관세가 낮아지면 관세철폐 일정이 전체적으로 앞당겨져 **실제 관세철폐 기간 단축 가능**

<한·중 FTA 상품 양허 현황>

품목군		한국		중국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일반품목(NT)	즉시	6,108 (49.9%)	418.5억불 (51.8%)	1,649 (20.1%)	733.7억불 (44.0%)
	5년	1,433 (11.7%)	31억불 (3.8%)	1,679 (20.5%)	58.3억불 (3.5%)
	10년	2,149 (17.6%)	173.3억불 (21.5%)	2,518 (30.7%)	312.5억불 (18.7%)
	소계	9,690 (79.2%)	622.8억불 (77.1%)	5,846 (71.3%)	1,104.5억불 (66.2%)
민감품목(ST)	15년	1,106 (9.0%)	79.5억불 (9.8%)	1,108 (13.5%)	219.2억불 (13.1%)
	20년	476 (3.9%)	34.1억불 (4.2%)	474 (5.8%)	93.75억불 (5.6%)
	소계	1,582 (12.9%)	113.6억불 (14.0%)	1,582 (19.3%)	312.9억불 (18.7%)
자유화율(NT+ST)		11,272 (92.2%)	736.4억불 (91.2%)	7,428 (90.7%)	1,417.4억불 (85%)
초민감품목(HST)		960 (7.8%)	71.3억불 (8.8%)	766 (9.3%)	250.1억불 (15.0%)
합계		12,232 (100%)	807.7억불 (100%)	8,194 (100%)	1,667.5억불 (100%)

□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양측의 시장 개방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철강)** 우리는 다자간철강협상(MSA)에 따라 대다수 품목을 이미 개방한 상황에서 우리 최대 철강 교역국인 중국의 추가 개방을 유도

- 중국 주요 품목 개방(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및 범용제품인 후판 등) 우리 중견·중소기업 보호(폐로망간 등 합금철 장기개방, 상하수도용 주철관 개방제외)

② **(석유화학)** '13년 약 217억불 규모의 對中 흑자 업종으로 중국의 범용제품 시장 개방은 미흡하였으나, 일부 고부가가치 품목 개방 유도

- 중국의 일부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 시장선점 기회를 확보하되 우리 중소업체의 민감제품(초산에틸 등)은 보호

③ **(섬유)** 對중국 주력 수출품목(편직물) 및 유망품목(기능성 의류, 유아복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국시장을 개방

- 우리는 순면사, 의류(직물제·편직제), 모사, 면직물 등 경쟁력 취약 제품은 부분감축 또는 양허제외

④ **(기계)** '13년 약 56억불 규모의 對中 무역흑자를 기록한 분야로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품목의 개방에 주력

- 중국의 최근 수요 증가 기계 분야(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 장비 등) 개방, 우리 중소기업 제품 보호(볼 베어링·부분품 등 기계요소 및 전기드릴 등 전동공구)

⑤ **(자동차·부품)** 중국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 우리는 현지 생산 진출 전략을 취함에 따라, 양국 모두 대부분 양허제외 또는 중장기간 관세철폐하여 영향은 제한적

⑥ **(전자전기)** 중국은 일부 중소형 생활가전(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및 의료기기, 가전 부품 등을 개방한 반면, 우리는 전동기·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의 국내시장을 중·장기 관세 철폐로 보호

⑦ **(생활용품)** 우리보다 10배 이상 큰 중국 생활용품 시장 대부분에 대한 개방을 유도하여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

* 중국 생활용품 시장 규모('13) : 한국(31조원) vs 중국(316조원)

- 중국은 수요증대 품목(콘텍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 등) 포함 생활용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 우리는 對中 수입액이 많은 일부 품목(핸드백(기타가죽), 골프채 등)을 장기(15~20년) 관세 철폐

□ **농수산 분야**에 대한 양측의 시장개방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농업)** 우리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중국의 전통적 민감품목(쌀, 설탕, 밀가루, 담배)을 제외하고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은 최대한 확보**

-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를 자유화** (냉동고기, 과실류, 채소류는 10년내 개방하고 신선육류, 과채류 가공품 등은 20년내 개방)
- **우리는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을 모두 양허 제외**하여 보호

② **(수산업)** 우리는 주요 수산물을 보호, **중국은 99%**(품목수 기준) **개방**

- 중국은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우리의 주력수출품목을 10년내 조기철폐**
- 우리는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을 모두 양허제외**하여 보호

2 서비스·투자

❖ 양측 모두 **DDA 협상에서 제시한 양허 수준 이상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특히 **중국은 법률·건설·환경·유통·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의 의미 있는 시장개방을 약속**

❖ 중·미 BIT 협상 진행, negative 방식에 따른 중국 국내 법규·제도 정비 등을 감안, **후속 협상***을 통한 **추가 시장개방 기회를 확보**

* 협상 발효 후 2년 내에 개시하고, 개시 후 2년 내에 완료하기로 합의

□ **(서비스)** 양측 모두 **DDA 플러스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분야	반영 내용
법률	▸ 중국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은 중국 로펌과 공동 사업 가능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에 한정)
건축/엔지니어링	▸ 중국내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도 인정
건설	▸ 중국내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도 인정 ▸ 상하이 FTZ 내 설립된 한국 건설기업은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 투자 비율 요건(외국 투자 50%이상) 제한 없이 중외합작 프로젝트 수주 가능
환경	▸ 폐수, 고형 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 허용
유통	▸ 중국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소매유통업체의 책 판매 허용
엔터테인먼트	▸ 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 분야 49% 지분 한국기업 허용

○ **(개방 수준)** ① 우리는 **한·미 및 한·EU FTA 서비스 분야 개방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 ② 중국은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중국 기체결 FTA 대비 높은 수준**

* **(영화 공동제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제작물과 같은 혜택이 부여되어, 스크린쿼터 등 외산 영화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음(부속서 8-B)

*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TV 드라마 등 공동제작 장려, 공동제작협정 체결 고려 합의(부속서 8-C)

□ **(금융)** 금융서비스 규제완화, 금융서비스 위원회 설치, 투명성 강화 등을 규정하여 **양국 금융산업에 대한 시장접근 기반을 개선**

○ **(건전성 조치 예외)**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전성 보장 등의 사유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한은 유지

○ **(금융 ISD 사전 협의)** 금융서비스 관련 투자자가 ISD 청구시 피청구국이 건전성 조치 항변을 하는 경우, 피청구국의 요청에 의해 양 당사국은 건전성 조치 해당 여부를 협의

□ **(통신)** 상대국 망·서비스에 비차별적 접근 보장, 비차별적 상호접속 제공의무, 교차보조금지를 통해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 조성**

○ 그외에 규제기관의 독립성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통신사업허가 절차 보장, 주파수, 번호 등 희소자원의 객관·투명·비차별적 분배, 국제로밍요금 인하를 위해 관련 통신서비스공급자 장려 등 규정

□ **(자연인의 이동)** 비자원활화, 상용방문자 등의 일시입국과 체류허용 요건 등을 규정하고, **단순 인력의 입국·체류 관련 내용은 불포함**

○ **在中 주재원 최초 주재기간 2년(당초 1년) 허용, 상용 방문자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확대**에 합의(비자 원활화 부속서)

○ 상용 방문자,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체류 관련 요건 및 체류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

□ **(투자)** 설립 후 투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대중 투자자 애로 해소 창구 설치 등 포함

○ **(설립 후 투자 보호)** 내국민대우, 이행요건 부과금지, 수용 및 송금 관련 투자 및 투자자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고, ISD를 포함

○ **(대중 투자 애로 협의창구)**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 성(省) 단위에도 우리 투자자를 위한 애로 협의창구를 설치하기로 합의

※ **(후속 협상)** 서비스·투자 분야는 일단 positive 자유화 방식으로 규정하고, 후속 협상을 통해 negative 자유화방식(중국이 체결한 FTA 최초 채택)으로 전환
- 후속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은 부속서 22-A에 규정

3 원산지

❖ 양국의 **교역구조**, 기체결 FTA 원산지 규정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특혜 원산지 규정에 합의**

❖ **개성공단** 생산 제품은 **발효 즉시 특혜 관세 혜택 향유 가능**

□ **(규정)** 특혜원산지 지위 부여를 위한 원산지 판정의 기준 설정

○ 원산지 판정의 기본원칙*과 보충적 원산지기준** 등 특혜원산지 지위 부여를 위한 기준을 규정

* ① 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② 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③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PSR 충족 전제)

** 미소기준, 누적, 불인정공정, 대체재, 간접재, 직접운송 등에 대해 규정

○ EEZ 기국주의, 섬유류 미소기준의 중량기준 인정* 등 우리 旣체결 FTA 원산지규정과의 일관성을 유지

* 섬유 관련 거래 대부분이 중량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우리 섬유업계가 요청

□ **(절차)** 일반적인 특혜관세 신청 절차뿐만 아니라 수출입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특혜관세 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 명시

○ **미화 700불* 이하 수출 물품**에 대해 중국에서 특혜관세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 중국 기체결 FTA의 기준이 대부분 600불 이하인 점, 양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다는 점을 감안시, 비교적 높은 기준을 확보하여 혜택 범위 확대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신청**을 통해 특혜관세 적용 가능

○ **불법적 특혜관세 향유 방지를** 위한 **사후 검증 시스템**을 마련, 특히 중국이 체결한 FTA 최초로 직접 방문검증 절차 도입

○ 원산지 관련 양국간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세당국간 협의 절차 및 위원회 조항 마련

□ **(개성공단)**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하여 **협정 발효와 동시에** 개성공단 생산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

○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한 총 310개 품목(HS 코드 6단위 기준)**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여 우리 기 체결 FTA 중 가장 우호적인 결과 도출

* 한-EFTA : 267개, 한-인도 : 108개, 한-ASEAN, 페루, 콜롬비아 : 100개

○ 원산지지위 인정기준은 ①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수출가격(FOB, 수출항본선인도)의 40% 이하와 ② 원산지재료 가치가 총재료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

* 비원산지재료 가치에서 개성공단 임금이 제외되어 해당 부분만큼 기체결 FTA 규정에 비해 비원산지재료 가치 요건 충족에 유리

○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를 통해 추후 한·중 양국의 북한내 역외가공지역 추가 설치 가능성 확보

<개성공단 관련 주요 협상 결과>

구분	한-중 FTA	비교	기발효 FTA
원칙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 **발효 즉시 원산지 지위 인정** * 위원회는 추가 OPZ 지정에 한해서 운영	≥	▶ 한-미 FTA, 한-EU FTA 등 5개 FTA ⇒ **위원회를 통해 추후 결정** ▶ 한-아세안 FTA, 한-EFTA FTA 등 5개 FTA ⇒ **발효 즉시 원산지 지위 인정**
품목	**310개** (매년 합의에 따라 개정 가능)	>	▶ 한-EFTA FTA: **276개** ▶ 한-인도 FTA: **108개** ▶ 한-아세안, 페루 FTA: **100개** * 한-싱가포르(무관세 국가) FTA는 비교 무의미
요건	**비원산지재료** 가치 / 최종재 가격 ≦ 40%	>	<한-아세안 FTA 기준> **비원산지투입** 가치 / 최종재 가격 ≦ 40% * 비원산지투입 = 비원산지재료+**임금+수송비**
	원산지재료 가치 / 총재료 가치 ≧ 60% * 원산지재료 = **한국産 또는 중국産**	=	원산지재료 가치 / 총재료 가치 ≧ 60%

4 규범 · 협력

❖ **중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다양한 규범·협력 분야 포함**

❖ 우리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중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① 통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등 **관련 챕터에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 ② **중개절차**(mediation) 및 **비관세조치 별도 작업반 설립**에 합의

□ **(통관 및 무역원활화)** 지역 세관 집행의 **일관성** 보장, 통관절차의 **원활화 및 투명성** 제고, **관세위원회** 설립 등

○ 상품의 반출시 **전자적 서류제출, '48시간내 통관' 원칙** 및 **'부두직통관제'**를 명시하여 통관 소요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SPS)** WTO/SPS 협정 적용 재확인, 위생검역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협정 이행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최소한의 내용으로 규정**

○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이 불포함**되어 WTO/SPS 협정 이상의 추가적인 의무 부담 없이 타결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전기용품** 국제공인 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자동차 부품**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화장품·의약품** 허가신청절차 내국민대우 부여 등을 통해 **시험인증 관련 구조적 애로해소 가능**

○ **기술규정 제·개정시 의견제시기간(60일) 명시, 소비자 제품안전 보호강화**와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국진출 촉진의** 근거를 마련

□ **(무역구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두는 한편, 발동·재발동 제한 등 **남용 방지** 위한 장치를 마련

○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 명확화, 가격약속 협의, 제로잉 미사용 관행 확인 등 WTO 수준 이상의 규정을 도입

□ **(전자상거래) 중국이 체결한 FTA 중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별도 챕터로 수용**한 바, 전자서명, 종이 없는 무역, 개인정보보호 등 **양국 간 전자상거래의 촉진 기반**을 마련

□ **(경쟁)** 중국 정부의 반독점행위 조사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 방지 등 보호 장치**를 마련,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상 의무 적용**으로 중국 내 우리 기업과 중국 공기업 간 공정 경쟁 가능

□ **(지재권) 저작권·저작인접권 강화**(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 인정, 방송신호 보호기간 확대(20년→50년) 등)**를 통해 한류 컨텐츠 보호기반 확보**

○ **외국의 유명상표 보호 강화** 등 상표권 보호 장치 마련하고, **영화 도둑촬영 금지** 등 **지재권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 강화**를 규정

□ **(환경)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 준수, 환경법 효과적 집행** 등 의무를 규정하고, **환경협력 강화**와 **환경위원회 설치**를 포함

○ **중국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환경법 집행, 다자환경협약 준수** 등 다방면에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투명성)** 협정 관련 조치의 공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 보장, 행정절차의 당사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보장 등 투명성 증진

□ **(분쟁해결) 비관세조치 관련 분쟁에 대한 중개(Mediation) 제도를 도입**하여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

□ **(경제협력) 양국 관심분야**(수산, 중소기업, 에너지·자원, 관광,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지방협력, 산업단지 등)에 대한 **협력 강화의 토대 마련**

○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어업을 통한 건전한 수산물 교역 활성화 등 불법어업(IUU) 방지를 위한 수산협력도 포함

* **(지방경제 협력)** 한·중 FTA 이익의 지방까지 확대하기 위해 양측은 중국 웨이하이시와 인천자유경제구역을 협력시범지구로 지정한 바, 시범협력 프로젝트는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협력 등 분야 포함

* **(한중 산업단지)** 양측은 각자가 지정한 산업단지에서 설립, 운영, 개발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지식 공유, 정보 교환, 투자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협력하기로 합의(구체 대상 지역은 추후 협의)